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대표발의: 차 해 영 의원)

|          |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26-100 |
|----------|--------|

발의년월일: 2026. 8. .

발의자: 차해영, 고안경, 김진천, 김해진,  
남해석, 배동수, 원성혜, 장덕준,  
장정희, 채종민, 최영섭, 한송이,  
허디모테

## 1. 개정이유

춤 허용업소 재지정 시 관계기관의 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실정을 해소하기  
위한 대안을 조례에 반영하여,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 
보호함으로써 구민의 안전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지정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(안 제6조제1항)

나. 재지정 시 제출 서류에 관한 사항(안 제6조제2항)

다.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피난시설, 방화구획  
및 방화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9조제1항제5호)

## 3. 관계법령

가.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3조

나.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제22조

다. 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33조

4. 조 례 안 : 붙임

5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

6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: 2026. 8. 24.~ 8. 29.

나. 의견제출: 없음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 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  
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2년”을 “3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 
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3조에 따라 점검하여 작  
성한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또는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 
률」 제22조에 따라 점검하여 작성한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  
서 1부
4. 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33조에 따른 전기안전진단 결과보고서 1부
6. 영업장 평면도(탁자, 의자, 세부배치 평면도) 1부

제9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있을”을 “있어야  
하며, 피난시설,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 
설치하지 말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<br>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<br>정<br>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6조(지정 유효기간 및 재지정 신청) ① 제5조에 따른 춤 허용업소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<u>2년</u> 으로 한다.                 | 제6조(지정 유효기간 및 재지정 신청) ① -----<br>-----<br>----- <u>3년</u> -----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② 춤 허용업소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 | ② 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. 2.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. 2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.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유흥주점(단란주점) 기준의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1부      | 3.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3조에 따라 점검하여 작성한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 또는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에 따라 점검하여 작성한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1부 |
| 4. 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13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. 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33조에 따른 전기안전진단 결과보고서 1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.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<신 설>

③ (생 략)

제9조(춤 허용업소의 안전기준 등) ① 춤 허용업소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~ 4. (생 략)

5. 비상구는 상시 개방되어 있을 것

6. ~ 13. (생 략)

6. 영업장 평면도(탁자, 의자, 세 부배치 평면도) 1부

③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춤 허용업소의 안전기준 등) -----

-.  
-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----- 있어야 하며, 피난시설,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지 말 -----

--

6. ~ 13. (현행과 같음)

# 【관 계 법 령】

##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

[시행 2024. 1. 4.] [법률 제19157호, 2023. 1. 3., 일부개정]

제13조(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) ①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작성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안전시설등이 건축물의 다른 시설·장비와 연계되어 작동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관계인(「소방기본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인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및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8. 4., 2021. 1. 5., 2023. 1. 3.>

② 다중이용업주는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8. 4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, 2018. 10. 16., 2021. 11. 30.>

③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대상, 점검자의 자격, 점검주기, 점검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[전문개정 2011. 5. 30.]

#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( 약칭: 소방시설법 )

[시행 2024. 12. 1.] [법률 제18522호, 2021. 11. 30., 전부개정]

**제16조(피난시설,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)**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「건축법」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,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피난시설,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
2. 피난시설,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
3. 피난시설,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「소방기본법」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
4. 그 밖에 피난시설,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

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,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**제22조(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)**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등에 적합하게 설치·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하거나 제34조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(이하 “관리업자등”이라 한다)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(이하 “자체점검”이라 한다)하게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관리업자등이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

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: 「건축법」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

2. 제1호 외의 경우: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

②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, 점검인력의 배치기준, 점검자의 자격, 점검 장비,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자체점검하게 하는 경우의 점검 대가는 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.

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에 대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, 소방시설등의 종류 및 점검인력 등에 따라 관계인이 부담하여야 할 자체점검 비용의 표준이 될 금액(이하 “표준자체점검비”라 한다)을 정하여 공표하거나 관리업자등에게 이를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에 관한 표준가격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⑤ 표준자체점검비의 공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⑥ 관계인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면제 또는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면제 또는 연기 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.

# 전기안전관리법

[시행 2026. 2. 1.] [법률 제20727호, 2025. 1. 31., 타법개정]

**제33조(사업)** 안전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 <개정 2025. 10. 1.>

1.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 및 연구
2. 전기안전에 관한 기술개발 및 보급
3. 전기안전에 관한 전문교육 및 정보의 제공
4. 전기안전에 관한 홍보
5.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·점검 및 기술지원
6. 제40조제3항에 따른 전기사고의 원인·경위 등의 조사
7. 제41조제3항에 따른 전기재해에 관한 통계의 조사·작성·분석 및 관리
8. 전기안전에 관한 국제기술협력 및 기술·용역의 수출
9. 전기안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위탁하는 사업
10. 전기설비의 안전진단과 그 밖에 전기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

**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 
일반음식점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 
미첨부 사유서**

**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**

-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**2. 미첨부 근거 규정**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

**3. 미첨부 사유**

-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비용추계 대상 아님

**4. 작성자**

| 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|
| 작성자 이름 | 보건소 위생과 황명진  |
| 연 락 처  | 02-3153-9192 |